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3. 14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이○민	1997.06.06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	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(반송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○ 중단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	인천시 서구 완정로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3.3.14. ~ 2023.3.29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오은희(Tel. 032-540-20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